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사전 승인된 직급·인원·방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원칙 준수를 위해 채용후보자 강임 허용 규정을 삭제하며, 지역인재 추천채용으로 임용된 군무원의 시보임용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면제하고, 경력 경쟁채용 군무원의 최초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개선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시보임용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일반병가 일수를 연 30일에서 연 60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5년, 10년,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며,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상위직을 정할 때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을 조직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맞도록 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용후보자 강임 허용 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

사전 승인된 직급·인원·방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원칙 준수 등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시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나. 지역인재 추천채용 군무원 시보임용 면제(안 제33조제1항)

지역인재 추천채용 군무원은 7급은 1년, 9급은 6개월의 수습근무 후 임용되므로 시보임용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일반직 국가공무원 지역인재와 동일하게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

다. 경력경쟁채용 군무원 최초 전보기간 확대(안 제36조제3항)

경채 군무원이 최초 채용직위에 단기간(2년) 근무 후 타 직위로 전보함에 따라 인력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채 군무원의 최초 전보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시보임용 기간 산입 규정 명시(안 제39조제2항)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군무원 시보임용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마.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제2항)

군무원의 의료여건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일반병가 일수를 '연 30일'에서 '연 60일'까지 확대하고, 5년, 10년,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바. 군무원 징계제도 개선(안 제109조제3항 및 동조제8항, 제119조제2항, 별표3)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상위직을 정할 때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을 군무원 편제기준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징계

위원회 구성시 징계 대상자와 동일 계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을 상위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등 군무원 징계제도를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
2. 수습직원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6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를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보임용 기간

제54조제1항 중 “연가”를 “연가, 병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를 “제12조제1항제1호”로,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반군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으로 보며,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제109조제3항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일반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의 경우 징계 등 심의대상자와 동일 계급인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도 상위직으로 본다.

제119조제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對比) 기준(제4조 관련)

일반군무원의 계급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과의 계급 대비
일반군무원(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	
1급	가군	가급		소장
2급				준장
3급				대령
4급				중령

5급		나급	5호	소령
6급	나군	다급	6호	대위
7급	나군	라급	7호	부사관
8급	다군	마급	8호	
9급			9호	

※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계급별 기준은 ‘편제에 따른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및 강임)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및 강임)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 2. 수습직원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전보) ①·② (생략)	제36조(전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③ -----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 4 년 ----- ----- ----- -----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1. 2. (생략) <u><신 설></u> ③ 삭제 ④ ~ ⑨ (생략)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 ----- ----- ----. -----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시보임용 기간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휴가) 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	제54조(휴가) ① ----- --- 연가, 병가----- ----- ② ----- ----- -----

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 -----제12조제1항제1호 ----- 제13조제3항----- ----- -----.
③ 일반군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 30일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일반군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으로 보며,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군무원 ----- ----- -----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의 경우 징계 등 심의 대상자와 동일 계급인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도 상위직으로 본다.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8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291